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Release date: December 2019

INT 2019-05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 : IFRS에 따른 회계처리 고려 사항

At a glance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자산은 최근 가치와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암호화자산 관련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감독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자산의 발행 및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인식, 측정 및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암호화자산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행 IFRS를 살펴보고 원칙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에서는 현재 논의중인 회계적 이슈 중 일부에 집중하여 IFRS 적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입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며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시와 고려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 주지만 암호화자산 거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지침과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간행물은 때때로 업데이트되어 더 많은 분야(예 : 암호화폐 채굴)로 주제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 고문이나 이 간행물의 저자 등 전문가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2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자산	5
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관련 이슈	11
암호화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 고려 사항	16
공시	22

1. 서론

1.1. 배경

암호화자산은 복사 또는 복제를 할 수 없게 설계된 양도 가능한 디지털 표현(표시)입니다. 암호화자산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블록 체인'(Blockchain)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 체인은 개인 대 개인 (Peer-to-Peer, P2P)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원장입니다. 암호화자산과 그 기반 기술은 다양한 '현실의' 사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화 (접근 및 전송의 용이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암호화자산은 이해하기 어려운 호기심의 대상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용도로 확산되는 기술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암호화자산은 지역의 규제 기관에서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에는 다양한 하위 집합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암호화자산은 교환의 수단, 블록 체인 기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수단 및 이 분야의 활동을 개발하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자산의 하위 집합 중 하나는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며 전통적인 통화와 일부 특징을 공유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유명한 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Ether)입니다.

회계기준 제정기구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2015 년 IASB 의 이사회 안건 제안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새 프로젝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IASB 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국가 및 초-국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IFRS 재단 자문 포럼인 회계기준 자문 포럼 ('ASAF')은 2016 년 12 월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암호화자산의 분류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양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IASB 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IASB 는 2018 년 7 월 이사회에서 (기업이 현행 IFRS 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안건 결정의 형태로) IFRS 해석위원회(IFRS IC')에게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IFRS IC 는 2019 년 6 월에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의제 결정을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암호화자산을 고려했습니다:

- a. 보안을 위해 암호화를 사용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 통화이고;
- b. 국가 기관 또는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았으며,
-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IFRS IC 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IAS 2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보유한 암호화폐에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합니다.

기술과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회계 처리를 결정하는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여러 판단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제는 일관되거나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1.2. 자주 사용되는 용어

암호화자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부 용어는 이 간행물에서도 사용됩니다.

코인/토큰(Coin/Token)

암호화자산은 '토큰' 또는 '코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기능에 따른 차이지만 두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환 매체의 역할만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자산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 '토큰'이라는 용어는 보유자에게 추가 기능 또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토큰이 전달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발행 기관의 백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서(White Paper)

백서는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잠재 투자자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 백서는 일반적으로 개발 로드맵과 개발팀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마일스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플랫폼(Platform)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유틸리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면 사용자는 특정 코인 또는 토큰을 소유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또는 'ICO'는 개발자가 블록 체인 토큰 또는 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ICO가 진행되면 발행자는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 (가장 일반적으로 비트 코인 또는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의 형태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개발자는 디지털 토큰 개발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디지털 토큰을 발행 (또는 발행하기로 약속) 할 수 있습니다.

ICO에는 현지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규제 고려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정화폐(Fiat Currency)

법정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지폐 또는 동전을 나타내며 금이나 은으로 전환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합법화된 것입니다(미달러나 유로 등).

1.3. 회계 목적을 위한 관련 특성

적용할 회계 기준을 결정하고 관련 회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특성에 따라 정의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암호화자산의 분류를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단일 회계 원칙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자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상 폭넓고 다양한 기능과 맞춤형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유형의 암호화자산이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목적으로 암호화자산을 분류하는 데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화자산의 주요 목적; 그리고
- 암호화자산이 고유한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

다른 특성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특성들은 공통적인 회계 처리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특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음 표에 설명된 대로 암호화자산의 4 가지 특정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제목	목적	내재적 가치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암호화폐는 비트 코인과 같은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 또는 코인입니다. 그들은 현재 중앙 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교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없음-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동화 토큰 (Asset-Backed Token)	유동화 토큰은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토큰으로 블록 체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 자산 (예 : 금 또는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토큰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보유자에게 회사의 플랫폼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유자 간에 거래될 수 있지만 주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발행자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한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그들은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권리; 때때로 회사 결정에 투표 할 수 있는 능력과 / 또는 기업의 잔여 지분에 대해 배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이익의 분배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성공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일부 암호화자산은 두 개 이상의 식별된 하위 집합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평가해야 할 하이브리드 암호화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아닌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암호화자산에 중점을 둡니다.

PwC 견해:

발행자 또는 소유자의 관점에서 거래의 회계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암호화자산의 목적과 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회계 모델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암호화자산의 조건 / 성격은 백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자산

2.1. 일반적인 견해

IFRS에는 암호화자산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명확한 산업 관행이 없으므로 암호화자산 회계는 다양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의 목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암호화자산의 특징들에 적용될 수 있는 회계 표준 및 기타 고려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2.2.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2.2.1. 적용 가능한 기준

기업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금 또는 통화

IFRS에는 '현금' 또는 '통화'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 목적 상으로 '현금'과 '통화'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는 통화와 현금의 관계를 언급하고 IAS 21, '환율변동효과'는 현금, 통화 및 화폐성 항목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는 다음과 같은 현금 및 통화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암호화폐는 법적 통화가 아니며 대부분 정부나 국가에서 발행 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암호화폐는 현재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일부 거래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는 각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2019년 11월) IFRS 하에서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는 인지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점은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회사는 앞에서 설명한 요소와 그 유효성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제 문제를 고려하여 현금 또는 통화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이외의 금융자산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다고 해서 보유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계약상 관계의 결과로 암호화폐가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암호화폐는 보유자에게 발행기업의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자산에 대한 잔여 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2019년 11월)까지 인지된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암호화폐는 유형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IAS 16,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IAS 2는 재고자산이 물리적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사업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통상적인 사업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회계처리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매 하여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기업은 일반상품 중개인 거래에 대한 IAS 2의 지침을 적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즉, 가격 상승)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PwC 견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재고자산 회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인 기업은 IAS 2 에서 일반상품 중개인 거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2 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가 일반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중개 거래인은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무형자산

암호화폐가 위 카테고리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IAS 38, "무형자산"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즉, 기업이 자산이 창출할 경제적 효익을 얻고, 그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함)이며, 그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적으로 판매, 교환 또는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다;
- 현금 또는 비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 물리적 형태가 없다.

IAS 38 은 적용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됩니다. (예: 재고자산)

2.2.2. 측정 고려 사항

위의 분석은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자산 기준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래 차트는 여러 가지 가능한 분류와 관련 측정 고려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적용기준	초기 측정	후속 측정	장부금액이동
재고 (IAS 2) - 기타	원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것	원가 초과 변동 - N/A 원가보다 하락하는 변동 - 당기손익
재고 (IAS 2) - 일반상품 중개업자에외	원가	순공정가치	손익
무형자산 (IAS 38) - 재평가모형(정책선택은 하되 활성시장의 존재 필요)	원가	공정가치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원가 초과 변동 - 기타포괄손익 원가보다 하락하는 변동 - 당기손익
무형자산 (IAS 38) - 원가모형	원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이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	원가 초과 변동 - N/A 원가보다 하락하는 변동 - 당기손익

*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상각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PwC 견해:

가능한 분류의 범위와 그에 따른 측정의 다양성은 암호화폐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모형 /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정 회계 정책을 적용하고 유사한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시의 중요성을 증가시킵니다.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사한 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되는 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업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한 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자산**2.3.1. 적용 가능한 기준**

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시 고려할 사항도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화자산에는 자신의 계정으로 보유하는 증권형토큰, 유동화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 (총칭 "암호토큰") 이 포함됩니다.

현금 또는 통화

암호토큰은 일반적인 교환의 매체로 발행되지 않지만, 보유자에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특정 기초 물리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암호토큰을 현금 또는 통화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호토큰은 일반적으로 현금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위 2.2.1 에서 설명) IFRS 에 따라 현금 또는 통화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금 이외의 금융자산

특정 암호토큰은 보유자에게 현금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미래 성과, 순자산에 대한 잔여 지분 또는 기초 자산의 가치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암호토큰이 보유자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 토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는 IFRS 9 '금융상품'의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유형자산

암호화자산은 유형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IAS 16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

IAS 2 는 재고자산이 물리적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사업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통상적인 사업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회계처리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매 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마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일반상품 중개인 거래에 대한 IAS 2 의 지침을 적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즉, 시세차익) 암호 토큰을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재고자산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암호토큰과 관련된 권리에 따라 IAS 38 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즉, 기업이 자산이 창출할 경제적 효익을 얻고, 그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함)이며, 그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별적으로 판매, 교환 또는 양도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다;

- 현금 또는 비화폐성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 물리적 형태가 없다.

IAS 38은 적용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무형자산에 적용됩니다. (예: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 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암호토큰은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들은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미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른 선급 자산의 회계처리와 유사할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토큰에 대한 측정 지침은 위의 2.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일부 암호토큰은 보유자에게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기초자산은 상품 (예: 금 또는 석유), 무형자산 (예: 라이선스 또는 특허), 예술품 또는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동화 토큰은 자산 자체에 대한 실제 청구권을 나타내지만, 다른 토큰들은 실제 기초자산을 지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 토큰이 기초 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경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 토큰이 자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초 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자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암호 토큰은 기초 자산에 대한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됩니다.

2.3.2. 암호 토큰의 범주에 적용

상기 1.3 절에서 설명한 암호토큰의 분류에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자산유동화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 토큰

유동화 토큰은 보유자에게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물리적인 이동없이 기초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 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처리는 기초 자산의 성격과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유틸리티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 토큰

유틸리티 토큰은 일반적으로 보유자에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토큰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며, IAS 38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선급자산과 비슷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3) 증권형 토큰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 토큰

증권형 토큰은 플랫폼의 미래 이익 또는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에 기초하여 보유자에게 현금화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재량적이거나 의무적 일 수 있으며, 기초 플랫폼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증권형 토큰은 IFRS 9에 따른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4)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 암호화 토큰

둘 이상의 하위 집합의 요소를 나타내는 암호화 토큰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적용 가능한 회계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계약 조항의 상호 작용, 토큰의 전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그 실질과 관련성이 포함될 것입니다.

2.4. 제 3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

2.4.1. 실무상 고려사항

암호화자산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서로 다른 암호화자산을 교환하거나 법정화폐를 암호화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 고객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예: 은행 또는 유사한 금융 서비스 법인) 이 경우 고객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암호화자산을 기업에 맡깁니다.

암호화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이러한 약정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고객이 암호화자산에 접근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정한 방법이 포함된 내용(예: 계약서 또는 백서상의 진술)이 있습니다. 약정의 다른 특징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할 수 있습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객의 암호화자산을 '차입'(borrow)하는 능력. 그러한 권리가 고객과의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자산의 분리 정도에 따라 암묵적일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과 기업이 '소유'한 암호화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정도.
-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 고객의 청구권. 이는 다양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보안.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은 '핫 월렛'(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지갑), '콜드 월렛'(Cold Wall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액세스하기 어려운 전자지갑) 또는 '웜 월렛' (Warm Wallet) (오프라인, 그러나 종종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콜드 월렛보다 연결하기 쉬운 전자지갑) 고객 또는 기업이 월렛에 대한 개인 키를 보유하고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 기업 / 고객이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잘못 적용된 암호화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이 해당 기업의 계정 / 지갑 또는 제 3 자의 계정 / 지갑에 보관되는지 여부.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관한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암호화자산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거나 계약상 집행가능한(예, 백서에 포함) 정도. 다수의 경우, 외부의 법률의견이 이러한 권리·의무를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여전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법률의견의 내용이 결론에 대한 확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회계 이슈는 IFRS 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을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4.2. 회계 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IFRS 는 회사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IAS 8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 의 규정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개념체계는 '자산'과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갖는 권리이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게 하는 기업의 현재 의무이다.'
---	--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고려합니다:

- 암호화자산을 차용하여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만약

기업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면, 상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이 청산된 경우 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 특히 고객이 기업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무담보 채권자의 지위라면, 이는 개념체계의 부채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암호화자산과 이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하는지(보유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리되지 않음) 어떠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서는 안 되는지(자산이 구분되고 기업이 관리인으로 보유함)를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자산이 기업의 자산과 분리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업 및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이나 백서(해당사항 있다면)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권리와 의무가 계약상 집행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외부 법률 의견이 증거로서 유효한지 여부. 집행가능성은 암호화자산을 다루는 특정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는 한 그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특정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법률 및 규정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 기업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내역과 고객의 원장에 반영된 각 고객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암호화자산의 내역 간 대사가 수행되는지 여부. 이와 유사하게, 각각의 거래가 관련된 고객으로부터 기인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장에서 이행된 암호화자산 거래 주문과 개별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된 주문 간에 대사가 수행되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대사가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지 여부.
- 전용 블록체인 주소의 추적가능성(모든 거래를 전용 블록체인 주소로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만일 암호화자산을 고객의 전용 블록체인 주소로 추적가능하다면, 이는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 암호화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지 아니면 제 3 자에 보관되는지 여부, 제 3 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암호화자산의 기록을 관리하는지 여부. 만일 암호화자산이 제 3 자의 계정/지갑에 보유된다면, 이는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 기업이 고객의 암호화자산을 핫 월렛 또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지 여부. 기업은 고객이 빈번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자산의 일정 부분을 hot 지갑에 보관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전한 보관을 위해 cold 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지갑의 개인 키를 고객과 기업 중 누가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암호화자산이 콜드 월렛에 보관되고 개인 키를 고객이 보유하여 고객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상기 사항과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구체적인 IFRS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자산이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의 문제이고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사실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될' 답은 없을 것입니다.

3. ICO(Initial Coin Offerings)와 관련된 이슈들

3.1. 실제 시장 상황

ICO는 암호화자산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기반한 자금조달의 형태입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ICO는 투자자/이용자에게 주식 대신 토큰을 할당합니다. 이러한 ICO 토큰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며, 토큰은 종종 플랫폼(개발되었다면)으로의 접근을 제공하고 암호화 거래에서 교환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ICO에서 발행되는 ICO 토큰의 수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양으로 결정됩니다.

각각의 ICO는 고유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발행자는 ICO 토큰 발행 시 발행되는 백서나 기초 문서를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서 또는 집행가능한 법적 요소로부터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CO는 증권 규제 기관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행자는 규제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무보고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3.2. 토큰 사전 판매 계약 (Pre-Sale Agreement) 관련 회계처리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때때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를 통해 초기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공모에 앞서 사모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합니다. SAFT는 사전 ICO 단계에서의 초기 투자이며, 투자자는 성공적인 ICO 시 변동되는 수량의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대가로 발행자에게 선불 자금을 제공합니다. SAFT 투자자가 수령하는 토큰의 수는 일반적으로 ICO 토큰의 발행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ICO 이전 단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SAFT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ICO 토큰 가격에서 사전 정의된 할인된 가격으로 SAFT를 정산합니다(예, 발행시 ICO 토큰 가격의 10% 할인). 따라서 성공적인 ICO에서 SAFT 투자자는 원래 투자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토큰에 더해 ICO 토큰 할인에 해당하는 보상을 수령합니다.

SAFT의 조건은 다양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처리의 결정 시에는 토큰의 성격/기능 및 미래 보유자가 갖게 될 권리 등(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SAFT의 일반적 형태 중 하나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SAFT로 ICO시 다른 투자자에 비해 SAFT 투자자가 토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SAFT는 ICO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시된 날짜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종료되고 기업은 투자자에게 원래 투자금(또는 그 일부)을 반환해야 합니다. ICO의 성공은 기업의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자금조달 목표('소프트 캡'이라고도 함)가 달성되지 않으면 ICO는 중단됩니다. SAFT 보유자는 명시된 날짜 이전에 SAFT 투자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만일 SAFT의 기초자산인 유틸리티 토큰이 보유자로 하여금 미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부여한다면, 토큰은 금융상품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행자의 관점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제공하는 SAFT는 IFRS 9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있는 경우"([IFRS 9 문단 2.4]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SAFT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미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ICO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며 발행되는 토큰의 특성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부는 지정된 기한까지 ICO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금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SAFT가 금융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점을 견지합니다. 이러한 경우 SAFT는 최초 인식 시 IAS 32에 따라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의 특정 조건에 따라 내재 파생상품과 같이 추가 평가가 필요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PwC 견해: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체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는 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과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3. ICO 발행자의 회계처리

ICO가 수행되면 발행 기업은 대가를 수령합니다. 대가의 형태는 다양한데(예,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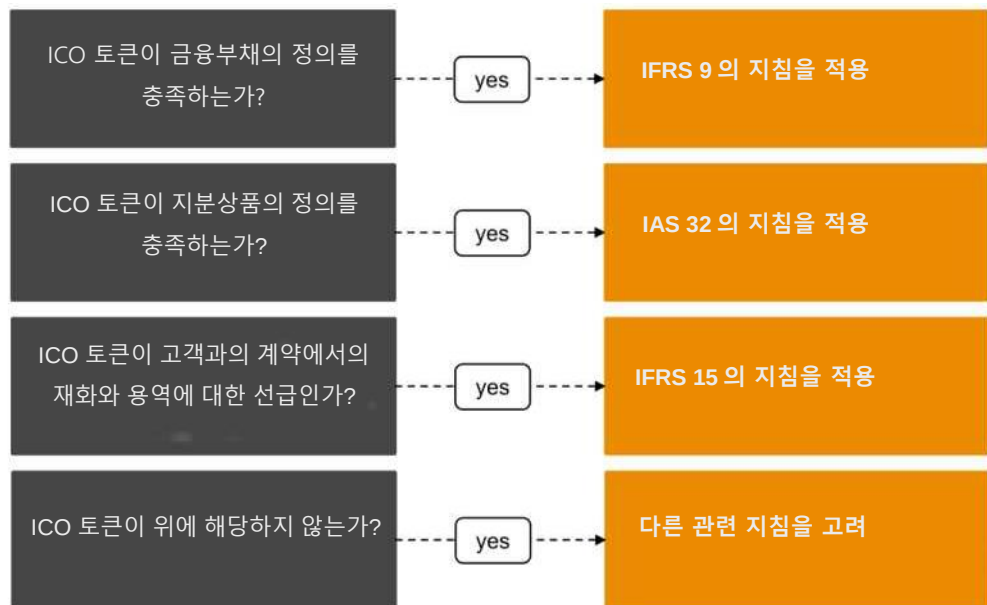
ICO는 IFRS 11, '공동약정'에 따른 분석이 요구되는 공동 약정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약정에서 ICO 기업과 투자자 간 관계가 협업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므로 약정이 공동지배력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방어권 성격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공동지배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ICO 대가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암호화자산일 때, 해당 거래는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교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재화의 교환의 경우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암호화자산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ICO에서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이 교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환 거래가 있고 약정이 공동지배력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ICO 기업이 수령한 대가는 분개의 차변에 기록됩니다. 대가의 형태에 따라 위 2.2와 2.3의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한편, 발행 기업의 주요 과제는 발행된 ICO 토큰의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분개의 대변). ICO 토큰의 회계처리는 발행된 ICO 토큰의 성격과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그림은 발행된 ICO 토큰의 특성 및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고려할 회계모델을 보여줍니다. 발행자의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금융부채

ICO 토큰의 발행자는 토큰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IAS 32의 금융부채의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또는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 또는
-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 자기지분상품이 '확정 대 확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ICO 토큰이 금융부채인 경우, 회계처리는 IFRS 9의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많은 ICO 토큰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나, 특정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시점까지 환불을 제공하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환불 조건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는 계약이 금융부채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잔여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IAS 32 문단 11]. 일반적으로 ICO 토큰은 보유자에게 잔여 지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자에게 잔여 이익, 배당, 청산 또는 해산 진행 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CO 토큰은 지분 상품의 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특정 프로젝트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ICO 기업의 잔여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익 거래/미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

발행 기업은 ICO 토큰의 발행이 실질적으로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 고객과의 계약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IFRS 15는 (1) ICO 토큰의 수령인이 고객이고, (2) 회계 목적의 '계약'이 존재하며, (3) ICO 토큰과 관련된 수행의무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IFRS 15의 부록 A에서는 고객을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로 정의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백서나 구매 약정, 기타 첨부 문서가 '집행가능한 권리 또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IFRS 15 부록 A]. IFRS 15 목적의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발행자가 제공한 문서에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IFRS 15 문단 9의 모든 조건을 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PwC 견해:

백서는 표준 법적 계약 또는 기타 청약 서류(안내서 또는 청약 제안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백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법적 의무를 부인하는 조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발행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ICO에서 수령한 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호스팅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종종 ICO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토큰은 보유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주된 활동의 일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자는 ICO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CO로부터의 수령액은 발행 기업에게 수익일 수 있고, 이는 초기에 이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행의무 및 수행의무의 이행방법과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은 ICO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 지침의 고려

위의 고려사항 중 어느 것도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IAS 8의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행자가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약정이 금융상품이나 고객에 대한 재화/용역 제공의 약속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법적 또는 의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행자는 IAS 37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3.4. ICO 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ICO 토큰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는 경우

3.4.1. 일반사항

몇몇 기업들은 ICO 를 통해 발행한 토큰 중 일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암호화자산의 거래에 이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또는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3.4.2 와 3.4.3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ICO 기업이 자가 사용을 위해 특정 수량의 ICO 토큰을 발행한다면, 해당 토큰의 발행으로부터 기업에 유입되는 대가는 없으므로 이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가 사용을 위해 발행한 ICO 토큰은, 소매 업체에서 향후에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소매 업체 자신이 보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우처 발행 당시에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제 3 자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할 때 필요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CO 기업도 교환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할 것이 없습니다.

3.4.2. 제 3 자가 제공한 용역과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제 3 자가 기업을 위해 플랫폼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ICO 토큰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용역 제공의 대가로 ICO 토큰을 받는 주체가 토큰을 발행한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제 3 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IAS 19 ‘종업원급여’에서 정의하는 종업원이 아닌 경우).

ICO 기업과 제 3 자 간의 교환거래에 적용할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 ICO 기업이 암호화자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제 3 자로부터 수취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분개의 차변 항목 결정)
- 교환거래의 대가로 제 3 자에게 지급한 ICO 토큰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 또는 제 3 자에게 부여한 권리의 특성(분개의 대변 항목 결정)

분개의 차변 항목을 결정할 때, 기업은 제 3 자로부터 수취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뿐 아니라 자산화 가능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3 자가 단순히 용역제공자로서 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수행하고 기업은 이에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이 IAS 38 ‘무형자산’의 문단 57-64 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자산화 요건에 따라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분개의 대변 항목은 ICO 토큰을 발행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3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이 ICO 토큰 발행으로 인해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언급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인식될 수 있고, ICO 토큰 보유자에게 ICO 기업의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지분상품이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ICO 토큰 보유자가 기업의 고객이고 해당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향후 제공할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ICO 토큰 발행 대가를 선취하였으며 이러한 거래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IFRS 15 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기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기준서를 참고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ICO 토큰 보유자에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분개의 대변은 IFRS 15 에 따라 ICO 기업이 제공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3.4.3.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용역과 발행한 암호화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ICO 기업들이 ICO 과정에서 발행한 토큰의 일정 수량을 자사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업은 발행한 ICO 토큰의 특성을 감안하여 IAS 19 ‘종업원급여’ 또는 IFRS 2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ICO 토큰이 ICO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 즉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은 IFRS 2 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IAS 19 의 비화폐성

급여 항목으로 인식, 측정될 것입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ICO 기업은 자신이 발행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 중 일정 수량을 자사의 종업원에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은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과 특성, 종업원이 고객이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토큰을 부여하기로 한 결정이 IFRS 15에 따른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ICO의 성공에 기여하였고 ICO에 성공한 사업연도말까지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ICO에 성공한 사업연도 종료 직후에 종업원에게 토큰 부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식:

ICO 기업은 동 약정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향후 이전할 재화나 용역을 종업원의 근로 용역과 교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IAS 19에 따른 단기종업원급여(문단 11, 19~23), IFRS 15에 따른 비현금대가(문단 66~69) 관련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약정은 종업원에게 가득기간동안 ICO 기업에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므로, ICO 기업은 가득기간동안 단기종업원급여 비용과 관련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득기간동안 인식된 부채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디지털 계좌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시점에 이연수익으로 재분류 될 것입니다.

동 사례에서 기업은 종업원으로부터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때에 부채를 인식하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업은 지급받은 때에 계약부채를 인식한다는 IFRS 15 상 계약부채의 표시 지침과도 일관됩니다.

측정:

ICO 기업은 IAS 19 문단 11에 따라, 종업원이 근로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의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할 금액은 ICO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틸리티 토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에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추정 원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처리:

가득기간동안 종업원이 근로용역을 제공할 때	ICO를 통해 유틸리티 토큰이 발행, 부여될 때
차변) 종업원급여	차변) 단기종업원급여 부채
대변) 단기종업원급여 부채	대변) 이연수익

PwC 견해:

거래의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각 거래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ICO 기업이 ICO 토큰과 교환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4.1. IFRS 13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다음 상황에서 암호화자산은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표시, 공시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하는 일반상품 중개기업이 암호화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보유	제 3 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암호화자산으로 지급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이 암호화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유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용역의 대가를 암호화자산으로 지급
ICO 발행자 입장에서의 수익인식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암호화자산
제 3 자를 대신하여 암호화자산을 보유하여 공정가치를 공시	투자펀드가 보유한 암호화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또는 공시)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며, IFRS 하에서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이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유의한 투입변수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개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IFRS 13 문단 73):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에 가장 높은 순위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만약 공정가치 측정일 또는 보고기간동안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수준 1 투입변수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평가기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 또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exit price)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수준 1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IFRS 13 문단 87).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염두에 둘 것은,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수준 3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이루어졌던 암호화자산이, 이후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충분하며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로부터 가격이 형성되고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을 관측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FRS 13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과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기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상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공시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IFRS 13 문단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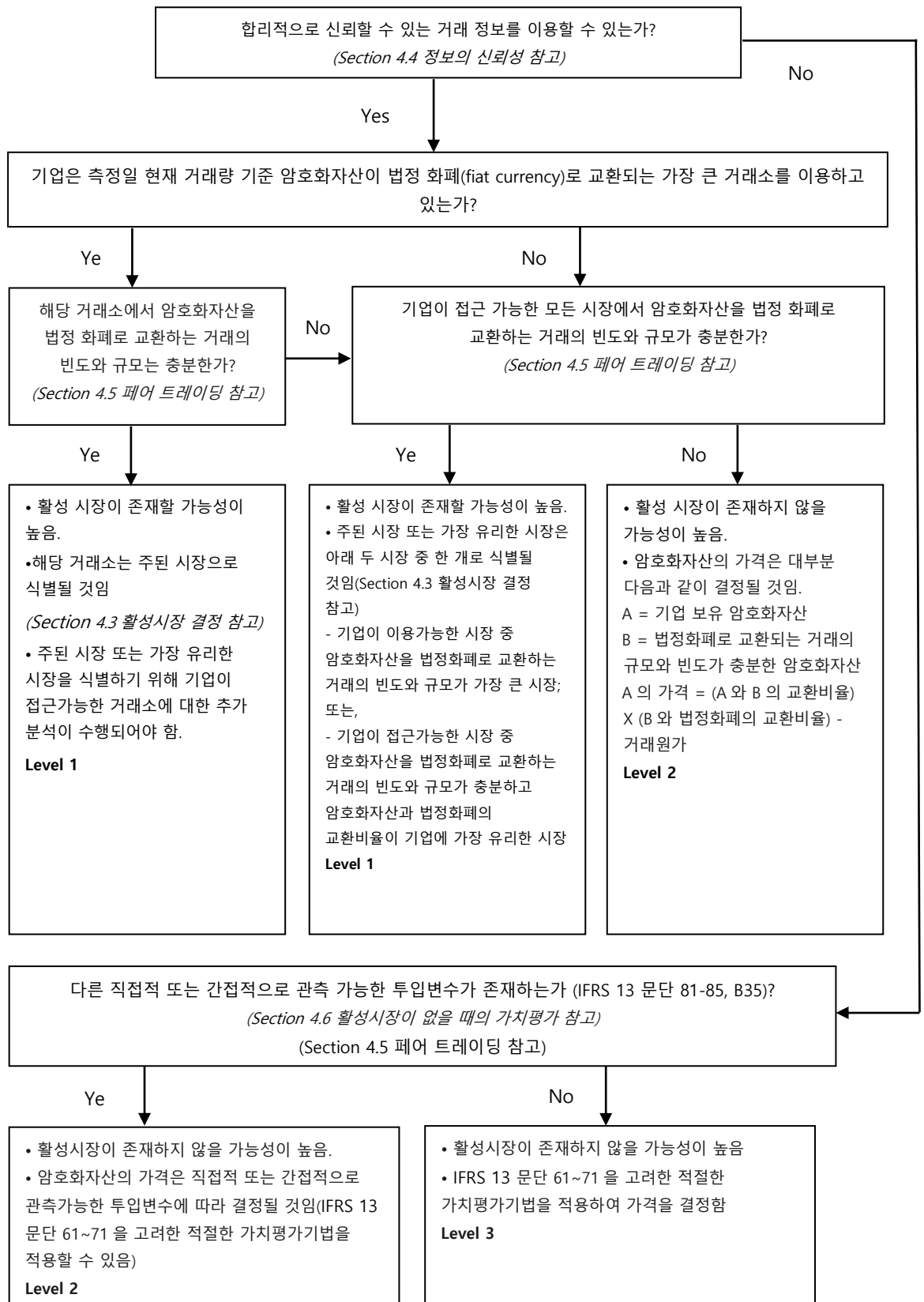
-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 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을 강조하는 정도
-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들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가 공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많은 암호화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중단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시장이 24 시간 개장) 보고기업이 어떤 시점에 암호화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지가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일 오후 11 시 59 분에 측정할 것인지 또는 보고기간말일 기업의 영업 종료 시간에 측정 할 것인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결 그룹 내 종속기업들이 다양한 시간대의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 측정일과 측정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측정일과 측정 시간의 결정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유의한 회계정책이 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주석 등으로 공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2. 암호화자산 평가 접근법



4.3. 활성시장 결정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측정일에 해당 암호화자산이 거래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즉, 수준 1 투입변수를 이용한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

IFRS 13 부록 A에서는 활성시장을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동안의 거래일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빈도가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일별 평균 거래총량을 거래되는 암호화자산의 총액(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일별 평균 거래 회전율(average daily turnover ratio)은 거래 규모가 충분한지 평가할 때 고려할 만한 기준입니다.

IFRS 13에서는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어떤 수준 이상이어야 활성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 주식들의 일별 평균 거래 회전율은 1% 미만입니다. 그러나 보고기간동안의 거래일수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주식들도 활성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CoinMarketCap¹(CMC)에 따르면 2018 년 12 월 한달 동안 시가총액 기준 상위 5 개 암호화자산의 거래일동안의 일별 평균 거래 회전율은 4~41%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양적 요소로만 판단할 때, 해당 암호화자산이 거래되는 활성시장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정보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질적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의 신뢰성(아래 Section 4.4 참고); 그리고,
2. 페어 트레이딩(아래 Section 4.5 참고)

특정 암호화자산들은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측정일에 각 거래소에서의 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 13 은 기업이 자산의 주된 시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된 시장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의 거래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 빈도가 가장 빈번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CMC 가 여러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래소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만을 취급하므로 특정 기업에게 있어 일부 거래소는 주된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IFRS 13에서는 시장들의 거래규모와 거래빈도가 거의 유사하여 활성시장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장을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규정합니다.

IFRS 13 문단 17 은,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이 식별되었다고 하더라도, IFRS 13 문단 15, B37~B44 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orderly transactions)로부터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유동성 공급자 등으로부터 장외에서 암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유입가격(entry price)으로서 IFRS 13 문단 9 와 B2 에서 요구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근거가 되는 유출가격(exit price)이 아니므로 공정가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¹ <https://coinmarketcap.com/>

4.4 정보의 신뢰성

어떤 시장참여자는 SEC에 주요시장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시장과 전통적 시장의 거래자료를 비교하고 기타 가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거래소들의 거래자료가 과장되었다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동 In Depth에서 해당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논하지 않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거래규모와 빈도를 평가함에 있어 사용된 거래정보를 확보할 때 데이터의 원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인된 시장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비공인된 시장에서의 자료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지만 규제기준에 대한 고려와 거래자료 전반에 걸친 감독이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5 Trading pairs

수준 1 투입변수에 대해 IFRS 13 부록 A에서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은 종종 전통적인 화폐로의 교환이 아닌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교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암호화자산에서 암호화자산으로의 교환은 정보 공급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 거래금액은 암호화자산을 법정화폐로 교환하였을 때의 교환비율이나 데이터 공급자가 제공하는 비율로 나타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만 특정 암호화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합니다. 암호화자산에서 암호화자산으로의 교환은 활성시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은 암호화자산을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교환한 다음 다른 시장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런 시장은 암호화자산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IFRS 13에서의 활성시장이 아닙니다.

IFRS 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암호화자산을 매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시장은 주요시장으로 간주되지만 그 시장에서 암호화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은 IFRS 13에 따른 활성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비트코인이 접근가능한 모든 거래소에서의 법정화폐로의 매매(exit trades)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 거래일과 평균회전율을 고려하여 IFRS 13에 따른 충분한 규모와 빈도인지를 결정하고 거래소가 주요시장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

암호화자산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산 A와 자산 B는 빈번하게 서로 전환되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교환비율이 존재합니다. 자산 A와 자산 B는 IAS 21의 범위에 해당하는 외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산 A는 손쉽게 활성시장에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자산 B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성시장은 없습니다. 자산 B에 대한 판단시 활성시장에서 자산 B가 자산 A로 전환된다는 것을 수준 1에 부합하는 관측가능한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자산 B에 대해서는 활성시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기능통화(법정통화)로의 수준 1의 공정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B를 현금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산 B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자산 A를 거쳐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나 수준 1 투입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하고 시간소요에 따른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 측정치 전체는 수준 1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활성시장의 정의에 법정통화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수준 1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부합하려면 법정통화로 측정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정통화는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IAS 21에 따른 외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IAS 21에 따른 외화나 기능통화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성시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암호화자산은 IFRS 13 문단 76~78에서 기재된 수준 1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법정화폐로의 전환에 항상 추가적인 수수료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수료나 차액이 관측가능한 경우라면(예를 들어 암호화자산이 다른 암호화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법정화폐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2 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용이하게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없는 암호화자산은 수준 3 이 적절할 것입니다.

추가로 활성시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시장 간 유의적인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할 때 주요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차이의 존재 그 자체로는 활성시장이 없다는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일부 암호화자산은 법정통화와의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하나의 암호화토큰이 1 USD 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자산들은 IAS 21 의 정의에 따른 외화나 기능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시장의 존재여부 판단시 다른 암호화자산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4.6. 활성시장이 없을 때의 가치평가

4.6.1.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많은 암호화자산들은 IFRS 13 에 따른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상황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 가치평가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은 측정된 암호화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시장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암호화자산에 대해서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접근법(IFRS 13. 문단 B8)을 사용하므로 이 방법론이 가장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사실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접근법(IFRS 13 문단 B8)이나 수익접근법(IFRS 13 문단 B10)의 적용은 실무에서는 매우 드물게 적용될 것입니다.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결정할 때, IFRS 13 에서는 평가기법은 상황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자산의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는 활성시장 밖의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중개인의 공시가격, 비규제 시장들에서 주어지는 다른 정보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중개인의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평가에 신중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공시가격은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특정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2019 년 11 월 기준) 중개인의 공시가격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평가모형은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암호화자산시장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가치평가기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IFRS 13 에서는 가치평가기법을 변경(또는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 낸다면 그러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시 고려됩니다.

- 새로운 시장의 발달
- 새로운 정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음
- 가치평가기법의 개선
- 시장상황의 변동

4.6.2. 가치평가방법의 보정

IFRS 13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를 판단할 때 제 3자 거래인 경우에 일정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자산의 취득거래가 관측가능한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례:

기업은 6월 1일 초에 활성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제 3자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자산을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은 CU100입니다(거래대가에 다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6월 1일 종료시 기업은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CU104로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CU4만큼의 공정가치 증가가 있었는지 고려하기 전에 기업은 가치평가방법/모형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 IFRS 13 문단 64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치평가방법/모형이 6월 1일 초에 지급한 CU 100에 맞춰 보정되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평가모형은 취득시점에 거래금액인 CU100과 다르지 않게 평가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록 CU100을 지불했지만 가치평가모형에 따른 결과(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사용)로는 공정가치가 취득시점에 CU102였던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6월 1일초의 가치평가방법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CU2(CU102-CU100)인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측정시점에(이 사례에서는 6월 1일말)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결과는 해당 차이가 조정된 CU102(CU104-CU2)가 될 것입니다.

최초거래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거래가격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자산을 측정함에 있어, 기업은 보정에 대해 IFRS 13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비추어 가치평가모형이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의 평가전문가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가 모두 이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제 3자 평가보고서에 의존할 때, 기업은 평가자가 사용하는 방법론이 IFRS 13에서 요구하는 보정과 다른 모든 측면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지급한 거래가격은 측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동일한 암호화자산의 가치평가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시

암호화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련거래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다루는 특정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회계기준이 없음에 따라 암호화자산 및 관련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특정한 공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자산 및 관련거래에 대하여 제한적인 공시나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공시사항이 판단의 영역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암호화자산 및 관련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에 대한 사실과 상황이 모든 이해당사자(특히 주주, 애널리스트, 감독기관)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별로 정보이용자의 기대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재무제표에 명확하고 충분한 공시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결정된 IFRS 회계정책에 따른 일반적인 공시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약테이블은 통상적인 공시와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로 요약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목록이 공시와 관련된 항목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업이나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공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사례
암호화자산 및 관련 거래 내역, 거래의 목적 포함	•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설명(암호화자산의 성격 포함) • 암호화자산 보유하는 사업모형 • ICO 세부사항(현금 및 비현금 거래) • 프로젝트의 성공여부(ICO 백서에 포함된 약정과 관련하여)
회계정책 및 그러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사항 (IAS 1 문단 117(2), 122)	• 보유한 암호화자산에 적용한 회계기준 • 측정기준 • 제 3 자를 위해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재무상태표 포함 여부(근거 포함) • ICO 로 유입된 대가의 인식(특히 ICO 발행에 따른 대변에 인식한 항목의 성격) • 회계기준 및 해석서의 변경을 포함하여 예측가능한 향후의 규제사항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IAS 1 문단 125)	• 수준 1 공정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연수익의 수익인식 형태
보고기간후 사건(IAS 10)	•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중요한 가치변동 • ICO 또는 기타 유의적인 목표치의 달성/실패(ex. 주요 수행의무의 달성여부)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IFRS 13)	• 보유한 암호화자산의 공정가치 • 공정가치서열체계에 따라 분류된 공정가치 수준 •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특히 주된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의 판단에 대한 고려사항과 사용된 근거 및 자료의 신뢰성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민감도에 대한 사항
위험 및 위험관리방법 (IFRS 7 이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암호화자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전략 및 조치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영역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기에 기업은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해당되는 공시를 시장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19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